

의안번호	제 215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3월 일 (제 268 회)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
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8년 2월 21일

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2. 21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제안이유

-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‘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’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감사 실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(안 제2조제2항)
-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.
(안 제8조의2)
-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. (안 제8조의3)

참고자료

관계법령 발췌

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) 및 동법시행령 제12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부칙 제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”를 “감사는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중 "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준용) 규정에 의한"을 "위원이"로 하고, "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"을 "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"으로 한다.

제14조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"을 "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"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)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"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7조의 준용)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부칙 제2조"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"로 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 (제8조의2제1항 관련)

(단위 : 만원)

부 과 대 상	과 태 료	비 고
1.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이상	500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	200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	100	
2.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	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	50	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8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제1항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준용)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②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징계)..... 위원이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..... 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부칙 제2조 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6. 2. 8. 대통령령 제19322호)

제14조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준용<개정 2005.3.31>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내지 제15조의5, 제17조의2, 제17조의4 내지 제19조, 제19조의3,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는 "소위원회"로, "지방의회" 또는 "본회의"는 "교육위원회"로, "의원"은 "위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본다.